

의안번호	제 970 호
의 결 연 월 일	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 자	육미선 의원 등 7인
발의연월일	2022년 1월 10일

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육미선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970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22년 1월 10일

발 의 자 : 육미선, 임영은, 이옥규,
박상돈, 심기보, 오영탁,
송미애

1. 개정이유

- 인용법령의 명칭 및 띄어쓰기를 맞게 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인용법령의 명칭변경에 따른 개정(안 제10조, 제14조, 제16조)
 - 「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
 - 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 → 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
 - 이내 → 이하
 - 1회에 한하여 → 한 차례만
 - 기타의 → 그 밖의
 - 호선 → 선출
 - 관하여 필요한 → 필요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

나. 관련부서 협의 : 행정국 자치행정과와 협의함.

다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라. 입법예고 : 관계없음.

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이내”를 “이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1회에 한하여”를 “한 차례만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제3호 중 “기타의”를 “그 밖의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호선”을 “선출”로 한다.

제10조 중 “대하여는 「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”를 “대해서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”로 한다.

제16조 중 “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”를 “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관하여 필요한”을 “필요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<u>이내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1회에 한하여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생 략)</p> <p>3. 위원이 사망·질병 또는 <u>기타</u>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p> <p>4. 5. (생 략)</p> <p>⑥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,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</p>	<p>제8조(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<u>이하</u>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<u>한 차례만</u>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</p> <p>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위원이 사망·질병 또는 <u>그 밖</u>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</p> <p>4.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, 위원장은 공무원이</p>

현 행	개 정 안
<p>년 위원 중에서 <u>호선</u>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.</p> <p>⑦ (생 략)</p> <p>제10조(수당 및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<u>대하여는 「충청북도위원회실비변상조례」</u>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(재정지원 등) ① (생 략)</p> <p>제16조(포상)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<u>「충청북도 포상 조례」</u>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</p> <p>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관하여 필요한 사항</u>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	<p>아닌 위원 중에서 <u>선출</u>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들의 동의로 선출한다.</p> <p>⑦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0조(수당 및 여비)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<u>대해서는 「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</u>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</p> <p>제14조(재정지원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6조(포상) 도지사는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<u>「충청북도 포상조례」</u>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.</p> <p>제1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<u>필요한 사항</u>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

관련법령 발취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

○ 첨부제외 관련규정

-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(비용추계서 작성대상)제4항 제1호

○ 사 유

- 의안의 개정 내용이 관계법령 명칭 및 띄어쓰기를 맞게 개정하고,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의 변경으로 의안의 내용이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여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.